

- 통장사본 : 유학중 주거대 은행 계좌를 법무부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, 체재비(79만원 수준)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제출 생략
 - 국내 시간제 취업허가에 따른 통장 입금 급여도 체재비로 인정
 - 입증방법 :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
 - 계좌변경 :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
 - 처리방법 : ICRM 비고란에 지정계좌 번호 및 심사내용 입력
- 유학경비 예치 증명서 :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금제도 특례조항 참조

○ 제출서류 공통 주의사항

- 제출서류 중 유학생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
- 재정능력 입증서류(예시, 잔고증명서, 통장, 장학금증명서, 입출금내역서 등²⁹⁾) · 학력 입증서류 · 자격증은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
 - ※ 사증(인정서) 및 체류허가 불허 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원본은 반환
- 첨부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(붙임 5) 및 번역문을 첨부(공증 불요)
- 대학의 대리 신청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에는 대학입학 전형 시 대학에 제출했던 서류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재량으로 완화하여 심사함으로써 유학생 피해 방지

5) 기타 사항

-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의 단기유학활동(체류관리과-1554, 2017. 3.13)
 -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 중 당해 협정상 유학활동이 명시적으로

29) 지도교수 재정보증 : 재정입증서류 제출 없이 대학교수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추가 징구(시행규칙별표3에 의거)이 경우 보증 대상을 학생 1인으로 제한